

■ 군인사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2.1.31>

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(제44조제1항 관련)

1. 토(tow) · 벌컨 · 엘리콘 · 전차 · 자주포 · 호크 · 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장비의 정비기술자
2.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 · 생산 또는 수리 기술자
3.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기술자
4. 군의 공창(工廠)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
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,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
6.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특수기술자